

#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의 핵심 내용과 정책제안 등을 압축해 국민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발간물입니다.

2023. 10. 10.  
No. 935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심교언  
www.krihs.re.kr

이길제 부연구위원  
김지혜 부연구위원  
윤성진 부연구위원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우지윤 연구원  
임지현 연구원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방안

### 주요 내용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급여 제도 등 기존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머물러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에 특화된 정책이므로 지속적인 사업 강화가 필요
- 장기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긴급하고 복합적인 주거요구가 있으나 이주비용 부족 등 현실적인 여건으로 사업을 통해서만 주거상향이 가능한 상황
-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참여자들은 이전 주택에 비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불안 해소로 주거 및 생활 전반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입증
- 이용자 및 종사자 FGI 결과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물량과 예산규모, 단년도 공모방식으로 인한 업무공백, 업무표준 미비 등이 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도출

### 정책방안

- ①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진단과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경험 분석을 통해 사업의 정책대상, 집행체계, 서비스 전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도출
- ② (정책대상)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를 위해 정책대상을 주거취약계층 전체로 포괄하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 운영 매뉴얼 또는 관련 법령의 미비로 나타나는 사각지대 해소
- ③ (집행체계) 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물량과 이사비 지원 및 사업 예산, 조직, 네트워크 등 필요 자원을 확보하고, 사업 공백과 업무혼선이 없도록 사업 수행방식 개선
- ④ (서비스 전달) 사업 집행상 장애를 제거하고, 표준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 표준을 수립하며, 이용자 관점에서 신속성과 편의성 증진 등 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개선

# 01.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의의

## 기존 주거복지제도의 대안으로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현황과 의의

최근 기후위기가 심화하면서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

- 그동안 주거취약계층은 공공임대주택을 절실하게 필요로 했지만 정보와 이주비용 부족, 까다로운 신청절차로 인해 현실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려웠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년부터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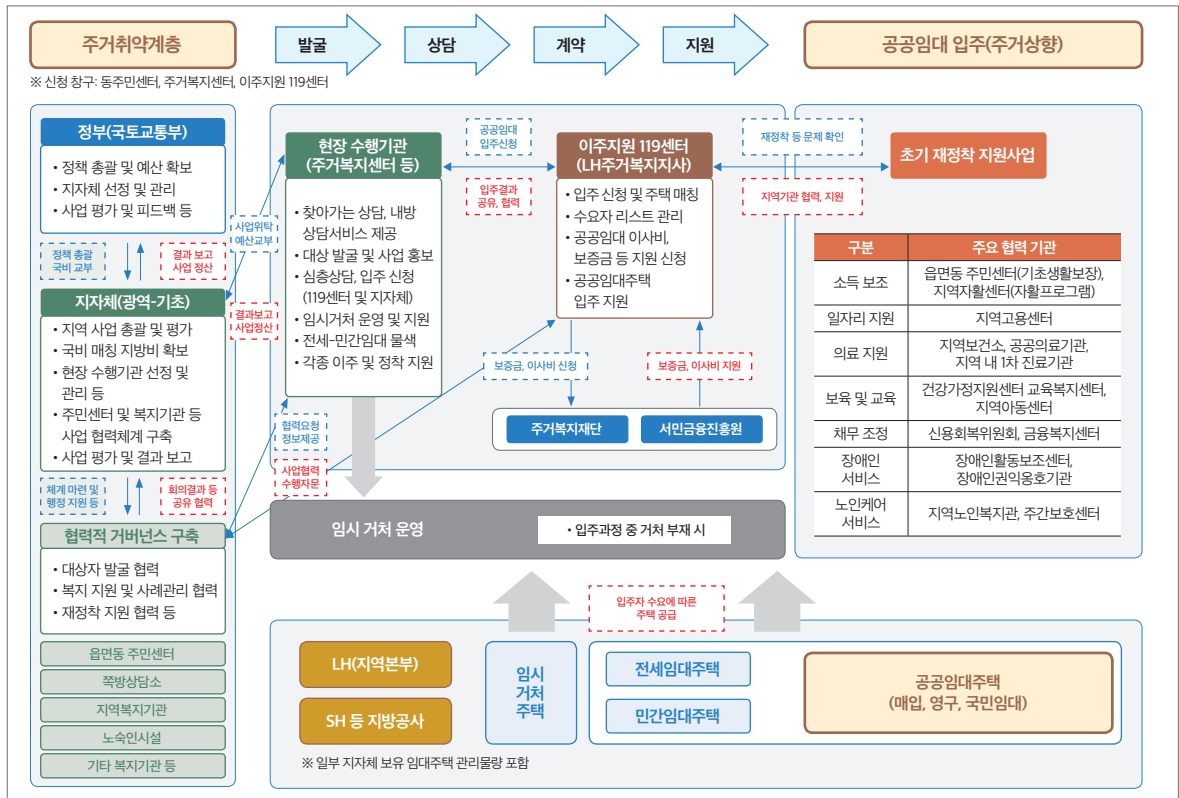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주거취약계층 발굴과 공공임대주택 이주·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이주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및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sup>1)</sup>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주거사다리 지원사업<sup>2)</sup>과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밀착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
- 사업대상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불안정 주거 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층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과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아동가구 등을 포함

집행체계는 사업의 총괄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주관기관인 광역 및 기초지자체, LH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관기관이 선정·운영하는 지역 주거복지센터나 이주지원 119센터 등이 사업을 수행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실적은 '21년 6,026호 수준이며, 국정과제<sup>3)</sup>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22년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sup>4)</sup>을 통해 비정상거처 거주자 우선공급을 연 1만 호 이상으로 확대

그림 1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수행체계



자료: 국토교통부 2021, 14; 이길제 외 2022, 89에서 재인용.

- 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3. 4. 7.] [국토교통부령 제1611호, 2023. 4. 7., 일부개정]
- 2)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건설 및 매입 등을 통해 확보한 주택이나 기존 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며, 2006년 노숙인이 심터 퇴소 이후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해주는 사업에서 출발하였음.
- 3)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 4) 2022년 8월 16일 국토교통부에서는 향후 5년간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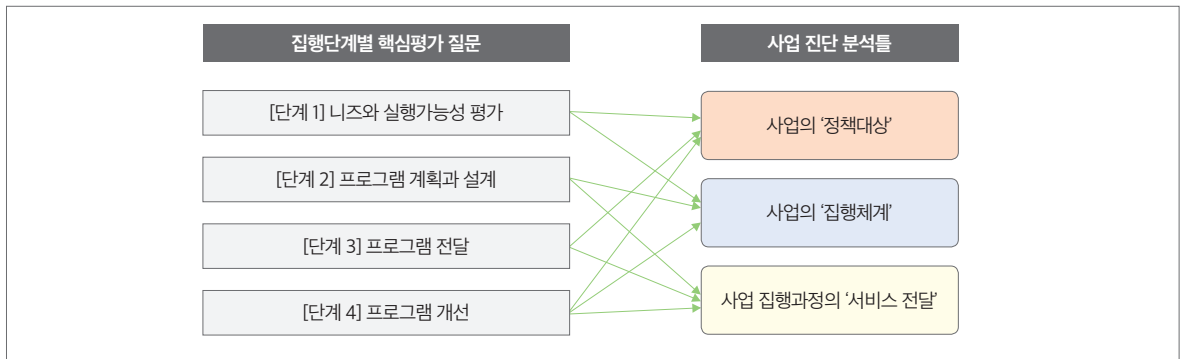
## 02.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진단과 문제점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진단 분석의 틀

정책 프로그램 진단 및 평가를 위해 집행단계별 핵심평가 질문(Love 2004, 68-69)을 기초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정책대상과 집행체계, 집행과정의 서비스 전달측면에서 연구 질문을 설정하고 문제점 진단

- (정책대상) 주거취약계층이라는 사업대상 설정의 적절성과 주거취약계층의 하위 정책대상별 편중 가능성을 분석
- (집행체계)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사업에 필요한 자원과 이와 관련된 사업 수행방식이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분석
- (서비스 전달) 주거상향 지원사업에서 상담 및 사례관리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사업 집행과정에서 적절한 주거상향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분석

그림 2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진단 분석 틀



### 분석영역별 문제점과 해결과제

(정책대상) 사각지대의 존재, 사업대상 규모에 비해 낮은 수혜비율과 하위 정책대상별 수혜비율의 불균형

- (정책 사각지대 문제) 현재 주거상향 지원사업대상 범위의 확대 필요성을 추가 검토하고, 재해 우려 여부 확인 등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제도에 대해 개선방안 도출 필요
- (낮은 수혜비율과 지원 불균형) 사업대상으로 추정되는 주거취약계층의 규모 대비 부족한 지원실적 개선을 위해 제도적·실무적 제약요인을 검토하여 사업 확대방안 마련 필요

(집행체계)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원 확보의 어려움, 이원화된 사업 수행방식에 따른 업무혼선

- (필요자원 부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부족 및 낮은 품질의 임대주택 공급,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낮은 전세보증금 및 이사비 지원기준, 사업 수행기관 간의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의 한계 등 문제 해결 필요
- (단년도 공모방식) 장기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성격과 달리 단년도 공모방식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연속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 (이원화된 사업 수행방식) 동일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중복 제공되거나 상담 진행에 따른 책임소재 불분명, 관리 시스템과 전달체계의 혼선 등 문제가 부각되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서비스 전달) 넓은 관할범위, 부족한 사업 홍보, 장기간 입주 대기, 지역별 서비스 격차 등

- (광범위한 사업대상지역) 지역 주거복지센터와 이주지원 119센터 등 현장 수행기관이 담당하는 대상지역의 공간적 범위가 너무 넓어 대상자 발굴이나 방문 상담이 어려움
- (입주 대기기간의 장기화) 공공임대주택 재고 부족으로 입주 신청 후 입주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으며,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꺼리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등의 문제점 발생
- (지역별 서비스 격차) 지역마다 사업 수행기관과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 지자체와 협력기관의 소통 여부 등 지역여건에 따라 서비스 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 필요

## 03. 주거취약계층의 특성과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sup>5)</sup>

### 주거취약계층의 특성과 주거욕구, 사업 만족도

주거취약계층은 근로활동이 어렵거나 부채로 인해 주거비를 자력으로 부담하기 어려워 열악한 주거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으며, 이주비용 부족, 주택탐색 어려움 때문에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한 상황

- 노인, 장애인, 아동동거 가구, 가정폭력 피해자 등 주거취약계층은 대부분 보증금 마련이 어렵거나 공공임대 입주를 위한 서류 작성 및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어 현장 밀착형 주거지원이 필요
- 노인, 장애인과 같이 서류 작성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또는 주거상향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외부의 도움이 필수적이었으며, 특히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인이 주거상향 지원사업 참여자를 선호하지 않거나, 공인중개사가 참여자들에게 비협조적일 때가 많으므로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주거취약계층은 대부분 긴급하고 복합적인 주거욕구를 갖고 있으므로, 공공임대주택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비 보조, 소득 지원, 자활 참여 등 사회복지 서비스 등과 연계한 지속적 지원 필요

-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받고 있으므로, 사생활이 보장된 독립된 주거공간, 온수 사용이 가능한 단독 화장실, 채광과 환기, 냉난방이 가능한 주택을 원하였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선호
-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주거유지를 위해 소득 지원과 자활 참여, 주거비 보조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장애가 있거나 심리치료 등 별도의 케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서비스와 연계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됨

현장 수행기관인 지역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거상향 지원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적 전달체계로 공식화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

- 지역 주거복지센터는 사업대상의 발굴에서 이주·정착 지원단계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주거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설치를 확대하고 공식화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필요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 지원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사업의 특성상 사업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질적인 주거환경과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어 지속적인 사업 확대가 필요

- 사업참여자들은 새로 이주한 집에서 이전의 집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과 희망을 경험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주거비나 경제적 부담에 있어 불안감이 줄어들었다고 응답

### 사업참여자 경험 분석을 통한 사업 집행상의 저해 요인 및 개선사항

사업대상자 여부에 대한 판정 시 모호한 규정과 매뉴얼 부재, 주관적 판단 회피 경향 등으로 사업 운영에 차질 발생

- 주거상향 지원사업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 지하층 거주자인 경우 '홍수, 호우 등 재해 우려'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실이혼 관계이거나 주소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에서 배제

입주가능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부족하거나 입지나 시설이 열악한 주택이 공급되어 주택탐색 기간이 장기화

- 공공임대주택 물량 부족으로 입주 대기기간이 장기화(최소 1~2년)되거나 입지 및 품질이 낮은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어 고령자·장애인 등이 입주를 포기함으로써 반강제적으로 열악한 거처에 지속 거주하는 상황 발생
- 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짧은 탐색기간과 낮은 지원단가로 인해 공급가능한 전세임대가 없거나 비좁은 공간으로 이주하게 되며, 이주·정착 지원금 부족으로 이사에 어려움을 겪거나 생필품 구매에 부담

단년도 공모사업으로 안정적 인력 운용 및 예산 집행 등에 제한이 있으며, 이원화된 사업 수행으로 기관 간 실적 경쟁이 발생하거나 정보공유 미비로 대상자 발굴 및 입주 신청 후 후속 지원 등에 어려움이 발생

- 전담인력 채용은 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지만 1년 단위로 예산이 집행되어 단기적으로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으며, 예산 집행이 지연되어 1~4월까지 업무공백 문제가 발생

5) 분석은 사례연구와 초점집단면접(FGI)과 같은 질적 분석방법을 사용함. 사례연구는 '22년 사업신청자 중 주거상향이 완료(예정)된 6가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을 수행하였으며, 초점집단면접은 주거상향이 완료된 사업이용자 12가구와 사업종사자 16명(지자체 주거복지센터 7명, 지자체 공무원 5명, LH공사 6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음. 구체적인 내용은 본보고서(이길제 외 2022)의 제4장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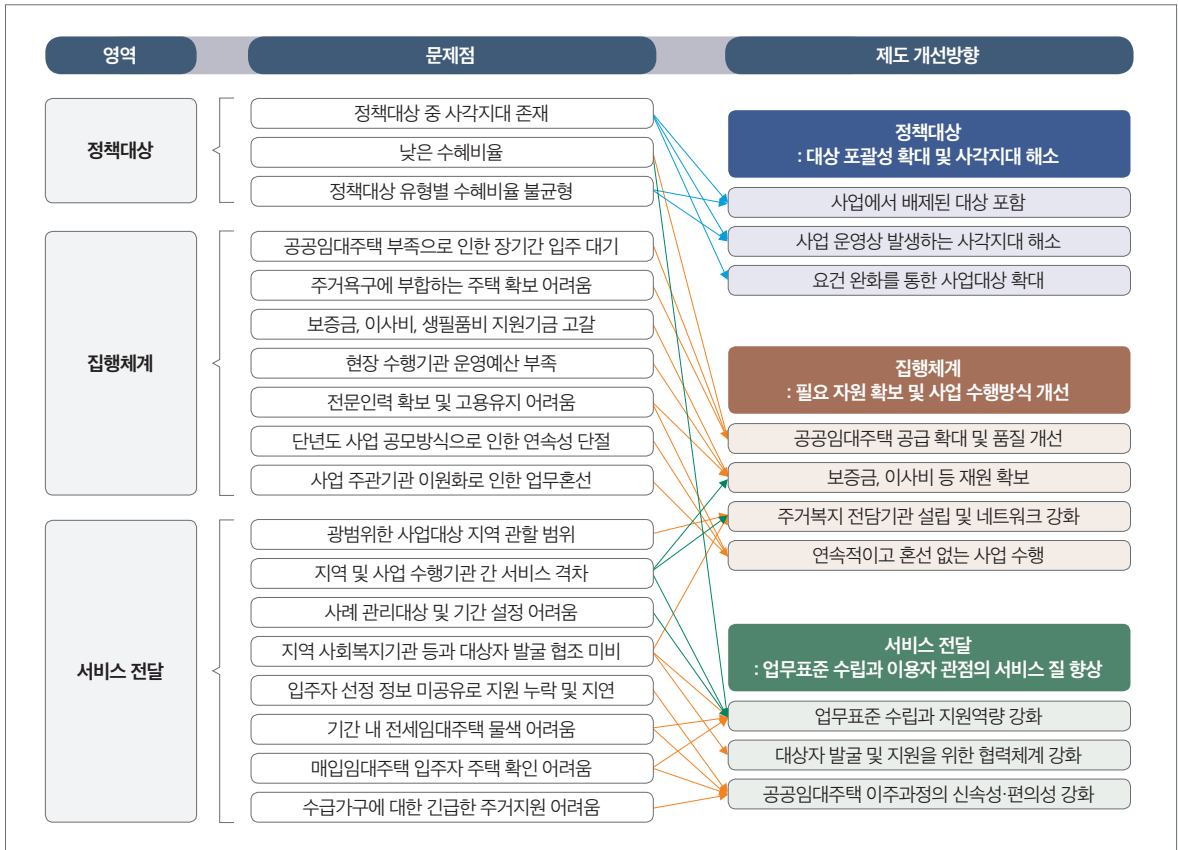
# 04.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 사업 진단 및 경험 분석 종합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진단과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경험 분석을 통해 사업의 정책대상과 집행체계,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확인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진단결과에 기초하여 개선방향 및 개선내용을 도출한 후 주거복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조사<sup>6)</sup>와 의견 수렴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개선방안 제시

그림 3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문제점과 제도 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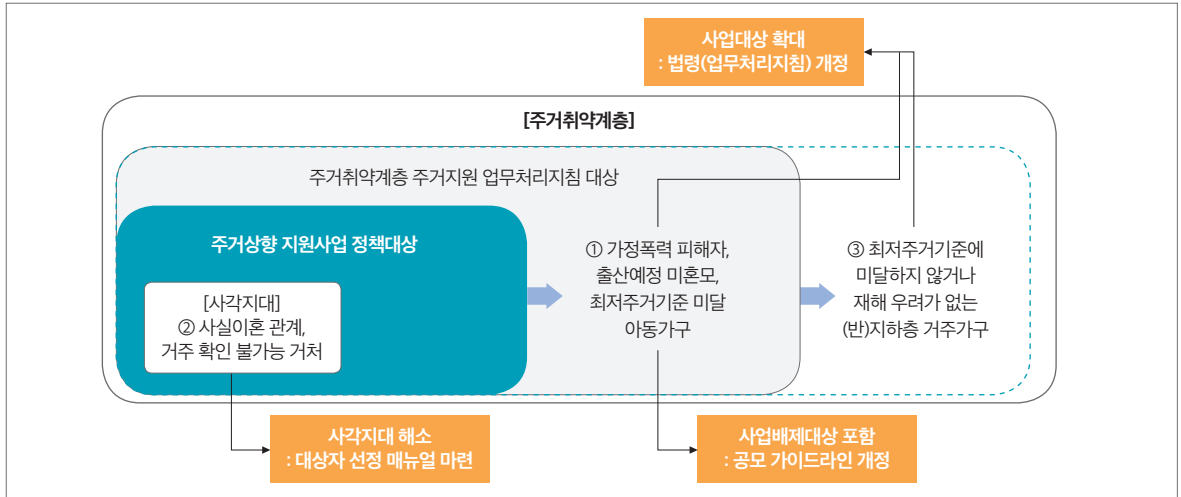
## 정책대상 개선방향: 대상 포괄성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기본방향)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를 위해 정책대상을 주거취약계층 전체로 포괄하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매뉴얼 또는 법령의 미비로 나타나는 사각지대를 해소

- '23년부터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현재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아동가구를 사업대상으로 포함하였는데, 이는 대상 포괄성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 사업 운영 매뉴얼 마련을 통해 사실이혼 관계, 거주 확인이 불가능한 거처 거주자 등 대상자 선정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
- 장기적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홍수, 호우 등 재해 우려',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같은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전체 지하층 거주가구로 사업의 정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6) 전문가 조사는 주거복지 또는 복지제도 전반,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해 이해가 깊은 연구자와 실무자 등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수행함.

그림 4 정책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단계적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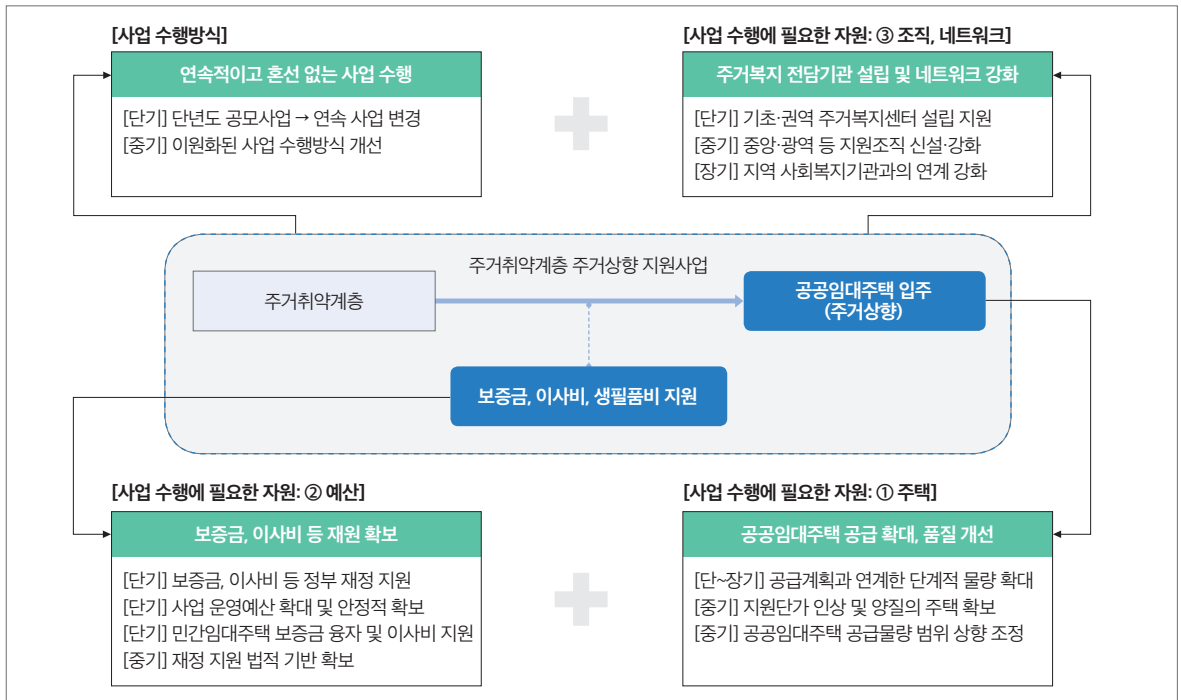


### 집행체계 개선방향: 필요 자원 확보 및 사업 수행방식 개선

(기본방향) 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물량과 보증금·이사비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 사업 수행 조직과 네트워크 등 필요 자원을 확보하고, 사업의 공백과 업무의 혼선이 없도록 사업 수행방식 개선

-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연계, 예산 확보 및 법령 개정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sup>7)</sup>하고, 지원단가 인상으로 양질의 주택 확보 및 품질 상승 도모
- 재원 및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해 보증금, 이사비 등 이주비용과 사업 운영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sup>8)</sup>하고, 지역 주거복지센터 등 현장 수행기관과 사업 지원조직 강화
- 단년도 사업 공모방식에서 수요조사를 통한 연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자체와 LH 간 지역 또는 업무영역 분담을 통해 업무혼선이 없도록 사업 수행방식 개선

그림 5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를 위한 단계적 집행체계 개선방안



7)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2023년 4월 7일)으로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 범위를 15%에서 30% 범위로 확대(제17조).

8) '23년부터 주거복지재단의 사회공헌기금으로 지원하던 보증금과 이사비·생필품 등을 정부재원으로 지원하도록 제도가 개선됨(제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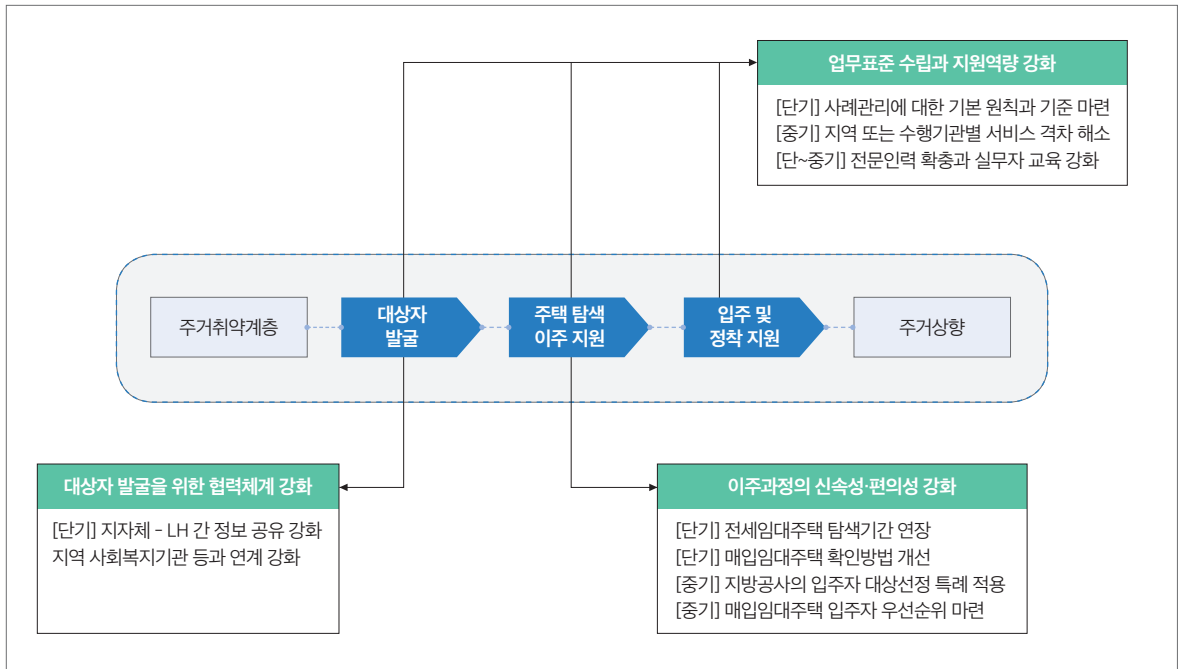


## 서비스 전달 개선방향: 업무표준 수립과 이용자 관점의 서비스 질 향상

(기본방향) 사업 집행상의 장애를 제거하고, 표준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표준을 수립하며, 이용자 관점에서 신속성과 편의성 증진 등 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개선

- 지역 및 수행기관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사례관리 기본원칙과 기준 등 업무표준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확충과 실무자 교육을 통해 지원역량을 강화
- 입주자 선정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거상향 희망자 정보를 공유하는 등 대상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 전세임대주택 탐색기간 연장, 예비입주자의 매입임대주택 확인방법 개선, 지방공사의 경우 수급가구에 대한 입주자 대상 선정 특례 적용 등 이용자 관점에서 주거상향 지원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개선

그림 6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를 위한 단계적 서비스 전달 개선방안



## 제도 개선효과 및 소요 자원 추정

(정책대상 규모 변화) 정책대상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경우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정책대상 가구는 '21년 기준 18.0만 가구에서 새롭게 12.9만 가구가 추가되어 총 30.9만 가구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표 1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정책대상 확대 시 규모 변화 추정<sup>1)</sup>

(단위: 가구)

| 구분                                  | 정책대상 <sup>3)</sup>                    |                    |
|-------------------------------------|---------------------------------------|--------------------|
|                                     | 구분                                    | 정책대상 <sup>3)</sup> |
| 기존 사업대상<br>(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     | 불안정 주거(A): 쪽방, 고시원, 여인숙, PC방, 비닐하우스 등 | 163,709            |
|                                     | 노숙인시설 거주자(B)                          | 7,361              |
|                                     | 최저주거기준 미달 (반)지하층(C) <sup>2)</sup>     | 8,488              |
| 사업배제대상 포함<br>(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2~3호) | 출산예정인 미혼모(E)                          | 19,002             |
|                                     | 가정폭력 피해자 등(F)                         | 5,814              |
|                                     | 최저주거기준 미달인 아동가구(G)                    | 33,097             |
| 사업대상 확대(지하층 요건 완화)                  | (반)지하층(C)                             | 79,545             |
| 합계                                  | 합계 (I=A+B+C+E+F+G)                    | 308,528            |

주: 1) 정책대상 규모는 이길재 외 2022, 60의 추정방법 및 결과를 이용하여 작성.

2) 홀수, 호수 등 재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층이 정책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나, 자료상의 한계로 재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층은 고려하지 않음.

3) 사업의 정책대상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가구의 규모를 추정한 결과임.

-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사업에서 배제되었던 대상을 포함하는 경우 출산예정 미혼모(1.9만), 가정폭력 피해자(0.6만),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3.3만) 등 약 5.8만 가구가 정책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
- '홍수, 호우 등 재해 우려', '최저주거기준 미달' 등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지하층 거주 가구 전체로 확대 시 추가적으로 약 7.1만 가구가 정책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

(공공임대주택 소요 자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만 호 수준으로 신규 공급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1조 2,65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기존 주택 매입임대주택(취약) 공급을 연간 5천 호, 지원단가를 호당 1억 6천만 원으로 가정하고, 기존 주택 전세임대주택(일반)은 5천 호, 지원단가는 호당 9,300만 원으로 가정

(이주비용 소요 자원) 정부 재원을 통해 보증금 및 이사비·생필품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간 1.5만 가구 기준 약 195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보증금의 가구당 지원액은 50만 원, 이사비 및 생필품비 지원액은 가이드라인의 최대 지원금액을 고려하여 가구당 80만 원으로 가정할 때, 연간 보증금 75억 원, 이사비 및 생필품비 120억 원의 재원 확보 필요

(사업 운영예산 소요 자원)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 수행기관을 100개소로 확대하는 경우 연간 2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사업 수행 지자체가 50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이주지원 119센터가 현행(50개소) 유지되며, 현장 수행기관 1개소당 예산을 2억 원으로 가정

## 결론 및 향후 과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책에서 배제된 계층, 주거급여 수급자임에도 여전히 열악한 주거환경에 머물러 있는 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에 특화

-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이동을 통해 주거수준을 단기간에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 사업 확대 필요
- 국정과제에서 강조하는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실현을 위해 향후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업무 수행기준 마련 등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2021.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의 이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워크숍, 내부자료.  
 \_\_\_\_\_. 2022.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 등 청사진 마련, 8월 16일. 보도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7078](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7078) (2023년 9월 20일 검색).  
 대한민국 대통령실. 120대 국정과제. [https://www.president.go.kr/affairs/gov\\_project](https://www.president.go.kr/affairs/gov_project) (2023년 9월 20일 검색).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3. 4. 7.] [국토교통부훈령 제1611호, 2023. 4. 7., 일부개정].  
 Love, A. 2004. Implementation Evaluation. In *Handbook of practical program evaluation*, eds. Wholey, J. S., Hatry, H. P., and Newcomer, K. E., 2nd, 63-97. San Francisco, CA: Jossey-Bass a Imprints, Wiley.

※ 이 브리핑은 “이길제, 김지혜, 윤성진, 박미선, 우지윤, 임지현. 2022.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 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임.

- **이길제**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부연구위원(gjlee@krihs.re.kr, 044-960-0296)
- **김지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부연구위원(kjh@krihs.re.kr, 044-960-0331)
- **윤성진**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부연구위원(sungjin@krihs.re.kr, 044-960-0321)
-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mspark@krihs.re.kr, 044-960-0294)
- **우지윤**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원(nawoo@krihs.re.kr, 044-960-0206)
- **임지현**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원(Jihyunlim@krihs.re.kr, 044-960-0306)